

## 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 경 안내

- 1. 관련 : 보험급여과-2757(2022.5.20.)
- 2.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(변경사항) 대상기관 변경\* 및 적용기간 연장\*\* 등
  - \* 대상기관 : 요양병원, \*\* 적용기간 : 2022.6.6. ~ 별도 안내 시까지

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부. 끝.

## 보 건 복 지 부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중앙방역대책본부장,대한병원협회장,대한의사협회장,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기초의료보장과장,서울특별시장,부산광역시장,대구광역시장,인천광역시장,광주광역시장,강원도지사,대전광역시장,충청북도지사,울산광역시장,충청남도지사,경기도지사,전라남도지사,경상북도지사,경상남도지사,제주특별자치도지사,세종특별자치시장

전결 05/31 주무관 **강지은** 사회복지사무관 **확지민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933 2022.05.31. 접수 2022.05.31.

우 30113 서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 / jieun0946@korea.kr

전화 044-202-2743 전송 044-202-1972 / jieun0946@korea.kr / 공개 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